관 세 청

수신자 KLNET 대표이사
(경유)
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시행 관련 홍보 협조요청

1. 귀사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신고업체는 '12.4.25까지 등록이 유예됨에 따라 등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3. 기존 신고업체가 귀사에 혼재적하목록을 제출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 및 아래의 내용을 프로그램 실행시 팝업형태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기존의 신고업체는 등록유예기간('12.4.25)까지 미등록시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적하목록제출업무를 할 수 없으니 4.10까지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전환 안내문 1부. 끝.

관 세 청 장

관세행정관	행정사무관	수출입물류과장	전결 03/23

협조자

시행 수출입물류과-842 (2012. 03. 23.)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수출입물류과 / http://www.customs.go.kr
전화 042-481-7823 전송 042-481-7829 / ywjpine@hanmail.net / 대국민공개